

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139호
- 다. 제출일자 : 2022. 8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9. 2.

2. 제안사유

-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(5개) 체계를 단일 위원회 체계로 개편하여 분과 간 연계한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,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함
-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, 위원장 직급을 현실화하여 위원장 대리출석으로 인한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분과 구분 및 분과위원회 운영 내용 삭제 (제6조 삭제)
- 나. 위원회 체계 개편에 따른 위원수 축소 및 위원장 변경, 위원 임기연장(안 제3조 및 제4조 개정)
 - 위원 수를 50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고,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도시교통실장으로 변경(안 제3조)
 -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(안 제4조)
- 다. 그 밖에 조문의 체계를 정비함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2. 6. 9. ~ 2022. 6. 29.
 - 제출의견 : 없음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버스정책시민위원회(이하 시민위원회) 분과위원회 폐지 후 시민위원회로 통합하고, 시민위원회 위원수, 위원 임기, 위원장 직급 등을 조정하여 시민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위원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 삭제 관련(안 제3조 및 제6조)

- 동 개정조례안 제3조는 시민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“50명 이내”에서 “15명 이내”로 축소·조정하고,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를 규정하는 한편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도시교통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것이며

동 개정조례안 제6조는 버스정책, 노선조정, 시설개선, 경영합리화, 시민혁신 등 총 5개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

- 시민위원회는 현재 42명¹⁾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, 각 위원들은 시민위원회 및 1~3개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음

최근 5년간 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시민위원회의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, 각 분과위원회도 버스정책, 노선조정, 경영합리화 분과위원회를 제외하면 개최 실적이 없는 실정이며, 행정1부시장이 참석하여 위원회를 개최한 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

※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(단위:회)

구 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 8월	
합 계	4	5	3	4	2	
버스정책 시민위원회	-	-	-	-	-	
분과위원회	버스정책	-	3	2	1	1
	노선조정	2	1	-	2	-
	경영합리화	2	1	1	1	1
	시설개선	-	-	-	-	-
	시민혁신	-	-	-	-	-
행정1부시장 참석횟수	-	-	-	-	-	

이는 시민위원회와 일부 분과위원회가 그동안 유명무실하게

1)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구성현황

구 분	계	학계/ 전문가	시민	직능대표	시의원	사업자/ 종사자	공무원	
버스정책시민 위원회	계	42	12	9	9	5	5	2
	남	24	10	4	0	4	4	2
	여	18	2	5	9	1	1	0

※ 분과위원회: 버스정책 16명, 노선조정 14명, 경영합리화 15명, 시설개선 15명, 시민혁신 15명

운영되었다는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으나 위원수가 너무 많아 개최시 위원별 일정조정 등 시간과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모되어 안전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만 개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위원수 조정, 분과위원회 폐지 및 통합, 당연직 위원장의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 것임

다만 위원수 규정을 “50명 이내”에서 “15명 이내”로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수준의 감축인지에 대한 측면과 노선조정 분과위원회 같이 전문성과 특수성이 필요한 위원회까지 모두 폐지하고 시민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임

- 아울러 동 개정안은 “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”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4항²⁾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■ 위원의 임기 관련(안 제4조)

- 동 개정조례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

2)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(위원회의 구성)

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경우 매년 신규 위원 위촉에 따른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, 교통전문가, 시민단체, 직능대표, 시의원, 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개진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위원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
- 또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3항3)에서 “예외규정을 제외하고 6년을 넘을 수 없도록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인의 장기간 위원선임에 따른 불공정 시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■ 서면심의 개최 관련(안 제7조제2항)

- 동 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은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

3)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(위원회의 구성)

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(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)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(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)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
2.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
3.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

-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에서 위원회 운영을 간편하게 하고, 행정의 신속성 확보하여 의사결정이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, 대면소통을 통한 위원간 의견교류가 차단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어려워져 위원회의 기능이 저하될 소지가 있어 서울시가 행정편의주의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